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697호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01일

국토교통부장관

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

1. 제한대상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차량
2. 제한기간 : 시행일부터 2년간(2022.12.1. ~ 2024.11.30.)
3. 제한방법 :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(금지)
4. 시 행 일 : 2022. 12. 1.